

결과보고서

사업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헌법통일법센터		
사업명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관련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사법절차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업기간	2024.4.1.~2025.2.28	사업비	

1. 사업 목적

-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쟁점을 추출
- 사법적 분쟁해결을 위한 규범적 기준을 마련
- 통일법 전문가의 양성과 통일법의 연구성과의 저변 확산
- 학제 간 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사업 내용

- 남북관계에 관한 판례 분석, 자료집 발간
- 국제법적 사례에 대한 연구
- 통일법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의 수행
- 통일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3. 사업 성과

- 통일법 판례연구 자료집 발간
- 제23호 '헌법과 통일법' 학술지 발간 2024.6.30.
- 제24호 '헌법과 통일법' 학술지 발간 2024.12.31.
- 학술대회(남북관계에 대한 최근의 판례 2024.7.13.)
- 학술대회(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쟁점과 과제 2024.11.8.)
- 학술대회(2024 통일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 2024.11.27.)
- 워크숍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제도 2023.09.09.-10.)
- 월례세미나 (제88회 - 제97회)
- 제19기 통일법 강좌 2024년 제1학기
- 제20기 통일법 강좌 2024년 제2학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헌법통일법센터

1. 사업 배경

☐ 개요

- 사업명: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관련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사법절차
- 기관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헌법통일법센터
- 사업비:

☐ 추진 배경 및 목적

○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쟁점을 추출

2000년 이후 추진된 남북협력관계에서 발생한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법제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 북한주민의 상속 청구 등 실제로 발생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례에 대한 대해 분석하고자 함.

○ 사법적 분쟁해결을 위한 규범적 기준을 마련

그동안 남한 법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중심으로 재판관할권, 원고와 피고의 적격에 관한 적법요건과 준거법의 결정과 같은 실체법적 요건을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소송절차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례마다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에 관한 규범적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 통일법 전문가의 양성과 통일법의 연구성과의 저변적 확산

통일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관련 연구기관과 학술대회, 정기 세미나, 학술지 '헌법과 통일법' 발간을 통해 통일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통일법강좌, 국가기관

특강을 통해 통일 관련 전문가의 육성에 기여하고, 대학원 수업에 통일법을 개설하여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함. 남북관계와 통일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축적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함으로써 국가기관이나 연구단체의 연구를 진작시키고 통일법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 함. 통일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는 한편,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성과를 통일기반 구축 관점에서 널리 확산하고, 통일학, 북한학, 평화학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보급하여 관련 연구의 지원에 기여하고, 통일법의 인프라를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2.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내용

○ 남북관계에 관한 판례 분석, 자료집 발간

남북한 분단 이후 발생한 법적 분쟁에 관한 사례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그에 대한 판례의 기준을 분석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적재산권, 이혼, 상속, 개성공단 행정소송, 대북전단살포에 관한 헌법재판 등 재판유형에 따라 그 규범적 기준을 분석하고자 함.

○ 국제법적 사례에 대한 연구

미국이 북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집행한 사례(웜비어 사건)를 비롯하여 북한에 관한 재판절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독일의 통일 이전에 동서독의 재판, 중국과 대만의 사법공조와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례도 연구하여 참고하고자 함.

○ 통일법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의 수행

헌법통일법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법무부, 통일부, 법제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공동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연 3회 공동학술대회(대한변협 서울협회, 법무부, 통일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이론적 연구는 물론 실무의 현안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

○ 통일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통일학과 평화학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쟁점과 과제' 학술대회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통일법강좌(연 2회, 각 10주간 수업), 통일법세미나(연 7회), 정기 워크숍 등을 통해 통일법에 대한 신진연구자와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함.

□ 일정별 추진 사항

일 정	추진 내용
03. 7. - 5. 23. (총 10차)	제19기 통일법 강좌
04. 27. - 12. 28. (제88회 - 제94회)	통일법제를 위한 월례세미나
6. 30.	제23호 '헌법과 통일법' 학술지 발간
7. 13.	학술대회 남북관계에 대한 최근의 판례
08. 23. - 08. 24.	워크숍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제도
9. 12. - 11. 28. (총 10차)	제20기 통일법 강좌
11. 8.	학술대회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쟁점과 과제
11. 28.	학술대회 2024 통일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
12. 30.	제24호 '헌법과 통일법' 학술지 발간
	남북관계에 대한 판례 자료집 발간

☐ 참여 인력

○ 책임자

성명	대학	학과	직급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구소(원)	유선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헌법통일법센터			

○ 주요 참여 인력

성명	소속	직급	이메일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종원	청주지방법원	판사	
김현창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은정	통일부	변호사	
전령현	법무법인 로고스	박사	
박정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장초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3. 사업 성과

☐ 사업 성과 및 관련분야 기여도

- 남북관계에 대한 판례 자료집 발간
- 제23호 '헌법과 통일법' 학술지 발간 2024.6.30.
- 제24호 '헌법과 통일법' 학술지 발간 2024.12.31.
- 학술대회 (남북관계에 대한 최근의 판례 2024.7.13.)
- 학술대회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쟁점과 과제 2024.11.8.)
- 학술대회 (2024 통일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 2024.11.28.)

- 워크숍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제도 2024.8.22.-23.)
- 월례세미나 (제88회 - 제94회)
- 제19기 통일법 강좌 2024년 제1학기
- 제20기 통일법 강좌 2024년 제2학기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보였음.

○ 사업의 효율성

정기간행 학술지, 학술대회 자료집, 연구결과 원고 및 자료집 등 통일기반구축사업 시행에 따른 결과물로 성과물을 도출함.

○ 사업의 영향력

3차례의 학술대회, 6차례의 월례세미나, 학술연합대회 등을 통해 통일법과 관련된 연구 지속력을 향상시키고 통일법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였음. 연 2회 발간되는 학술지 (헌법과 통일법)와 2차례의 통일법강좌, 워크숍, 마지막으로는 통일법의 체계적 이해 자료집 등을 발간을 통해 순수 통일법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성과로 평가되며 향후 알찬 연구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 사업의 발전가능성

남북관계 제도의 체계적 분석과 통일법의 주요쟁점을 연구를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법률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폭발적인 연구수요가 항시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세부사업에서 '통일법 논문현상 공모'는 시행결과 양질의 우수한 논문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이 어려웠음. 홍보기간과 논문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보완하여 더 많은 참가자들의 참여와 높은 수준의 논문투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한 이후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 함.

□ 향후 계획

전체적인 사업은 올해의 사업과 동일할 것으로 보이나, 연구과제와 주제 등을 선정함에 있어 보다 세밀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 재점검하여 추진할 계획임. 외부강사의 협조, 주제 선정 등을 재정비하여 2024년보다 업그레이드 된 강좌로 진행할 예정임.

□ 건의사항

통일기반구축사업을 진행하는 서울대학교 내부 기관 사이에 각종 행사 및 자료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6. 성과 관련 지표

□ 대표 사업 실적

- 남북관계에 대한 판례 자료집 발간
- 제23호 '헌법과 통일법' 학술지 발간 2024.6.30.
- 제24호 '헌법과 통일법' 학술지 발간 2024.12.31.
- 학술대회(남북관계에 대한 최근의 판례 2024.7.13.)
- 학술대회(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쟁점과 과제 2024.11.8.)
- 학술대회(2024 통일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 2024.11.28.)
- 워크숍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제도 2024.8.22.-23.)
- 월례세미나 (제88회 - 제94회)
- 제19기 통일법 강좌 2024년 제1학기
- 제20기 통일법 강좌 2024년 제2학기

< 활동 내역별 세부 결과 및 평가 >

1. 19기 통일법 강좌

□ 개설강좌

차 시	일 시	강 의 주 제	강 사
1	3. 7.(목) 19:00~	☛ 헌법과 통일	한동훈 책임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2	3. 14.(목) 19:00~	☛ 북한의 법이론과 체계	송진호 판사(대전고법)
3	3. 21.(목) 19:00~	☛ 남북교류협력법제	김현창 검사(서울중앙지검)
4	3. 28.(목) 19:00~	☛ 북한인권법	진호성 책임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5	4. 4.(목) 19:00~	☛ 남북합의서의 법적 쟁점	이상협 변호사(지놈인사이트)
6	4. 25.(목) 19:00~	☛ 통일합의서와 통일헌법	박종원 판사(청주지법)
7	5. 2.(목) 19:00~	☛ 통일국가의 사회통합	정구진 박사(서울대)
8	5. 9.(목) 19:00~	☛ 통일국가의 경제통합	김완기 박사(산업통상자원부)
9	5. 16.(목) 19:00~	☛ 통일국가의 군사통합	강민식 교수(육군3사관학교)
10	5. 23.(목) 19:00~	☛ 중국의 일국양제	전령현 변호사(로고스)

- 2024년 3월 7일-5월 23일 기간 동안 통일법 강좌가 개설됨.
- 다수의 수강생이 위 표에 기재된 과목 수강을 통해 통일법, 통일헌법, 남북관계, 북한법, 통일 이후 사회 통합에 대한 학습이 진행됨.
- 이번 통일법 강좌에서는 통일 문제와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중국체제에 대한 소개와 학습이 1회 이루어짐 (5월 23일 "중국의 일국양제")
- 통일법 강좌를 통해 수강생으로 하여금 통일문제에 관한 법적 그리고 사회과학적 지

식을 전달하는 것과 수강생으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에 두었음.

-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수강생 대부분이 진지하게 참여하여 강좌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도출되었다고 판단됨.
- 강사로 참여한 인원들도 강의 준비 및 진행에 있어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고 판단됨.

2. 20기 통일법 강좌

□ 개설강좌

차 시	일 시	강 의 주 제	강 사
1	9. 12.(목) 19:00~	헌법과 통일	한동훈 책임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2	9. 19.(목) 19:00~	북한의 법이론과 체계	송진호 판사(대전고법)
3	9. 26.(목) 19:00~	남북교류협력법제	김현창 검사(서울중앙지검)
4	10.10.(목) 19:00~	북한인권법	진호성 책임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5	10.24.(목) 19:00~	남북이산가족에 관한 법제도	한경태 서기관(법무부)
6	10.31.(목) 19:00~	남북합의서의 법적 쟁점	이상협 변호사(지놈인사이트)
7	11. 7.(목) 19:00~	통일합의서와 통일헌법	박종원 판사(청주지법)
8	11.14.(목) 19:00~	통일국가의 사회통합	정구진 박사(서울대)
9	11.21.(목) 19:00~	통일국가의 군사통합	강민식 교수(육군3사관학교)
10	11.28.(목) 19:00~	중국의 일국양제	전령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 2024년 9월 12일-11월 28일 기간 동안 통일법 강좌가 개설됨.
- 다수의 수강생이 위 표에 기재된 과목 수강을 통해 통일법, 통일헌법, 남북관계, 북한법, 통일 이후 사회 통합에 대한 학습이 진행됨.
- 이번 통일법 강좌에서는 통일 문제와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중국체제에 대한 소개와 학습이 1회 이루어짐 (11월 28일 "중국의 일국양제")
- 통일법 강좌를 통해 수강생으로 하여금 통일문제에 관한 법적 그리고 사회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수강생으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에 두었음.

-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수강생 대부분이 진지하게 참여하여 강좌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도출되었다고 판단됨.
- 강사로 참여한 인원들도 강의 준비 및 진행에 있어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고 판단됨.

<통일법 강좌 총평>

- 1년 동안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본 강좌를 통해 다수의 수강생이 통일과 관련된 법적 쟁점 및 사회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 및 국방 분야에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음.
- 통일법 강좌를 통해 강사로 나선 기존 연구자들에게는 통일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해 숙고하고 변화하는 정치·사회 환경에 비추어 자신들의 연구를 보완할 계기가 되었음.
-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로 인해 학문적 관심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 연구자들이 각 분야에서 연구를 지속할 동인을 제공하고, 기존 쟁점 뿐만아니라 새로운 쟁점들에 대해 숙고함으로써 추가적인 연구의 동인을 제공하였음.
- 본 강좌는 회차를 거듭해오며 여러 수료생이 배출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통일법 전공으로 본교 석/박사 과정에 입학해 학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고 있음.
- 금년 19, 20회 통일법 강좌를 통해서도 여러 수강생들이 통일 관련 법적, 사회과학적, 경제적, 국방관련 쟁점들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미래의 연구자 배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수강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자신들의 영역에서 그러한 문제를 염두하게 됨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월례세미나 연구 성과

(1) 제88회 월례세미나 (2024년 4월 27일 개최)

- 발제자는 통일부 김은정 서기관이었으며 발제는 “평화경제특별구역법”에 대해 이루어짐.
-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이 제정 되었는데 그 내용과 기대 효과,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은 남북 경제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특정 지역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구역 지정: 남북 간 협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
- 법적·행정 지원: 해당 구역 내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공
- 남북 경제 협력 확대: 남북 기업 간 합작 투자 및 교류 활성화
- 국제 협력 연계: 외국 기업 및 국제기구의 투자 유치 및 지원 제도 마련
-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남북 경제 협력 활성화: 남북 간 교역과 협력이 증가하여 경제적 시너지 효과 발생
- 한반도 평화 정착 기여: 경제 협력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상호 신뢰 증진
- 국내 경제 성장 촉진: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산업 다변화를 통해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
- 국제 사회와의 연계 강화: 글로벌 투자 유치를 통해 국제적 협력 기반 확대
-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치적 환경 조성: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유지 및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며 법적·제도적 정비: 남북 교류를 위한 세부 법률 및 규정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자원 확보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방안 마련되어야 하고 국제적 협력 확보: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은 남북 간 경제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법적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법안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국제적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결론 도출.

(2) 제89회 월례세미나 (2024년 5월 25일 개최)

- 발제자는 서울법대 박사과정 중인 박정훈 학생이었으며 국제규범의 위헌심사 기준화 문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함.

1. 국제규범과 헌법의 관계

- 국제법과 헌법은 독립적인 법체계이지만 서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국제규범이 헌법보다 상위인지, 동등한지, 하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2.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효력

- 헌법보다 우위설: 국제규범이 국가 간 합의이므로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에서 이를 인정하는 조항이 없어 설득력이 약하다.

- 헌법과 동일설: 국제규범, 특히 국제인권조약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헌법보다 하위, 법률보다 우위설: 법률보다 국제규범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다.

- 법률과 동일설: 국제규범은 일반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 국제규범의 헌법재판 적용 가능성

(1) 국제규범을 위헌심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 현재 법체계에서 국제규범은 헌법재판에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심사 기준이 될 수는 없다.

- 그러나 국제인권조약이 헌법 제6조(국제법 존중주의)와 결합하여 간접적으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2) 국내법의 국제법 합치적 적용 필요성

- 우리나라 법원은 국제규범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의 차밍 벤티 원칙(국내법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이 대표적

인 사례다.

- 국제규범을 고려한 법 해석은 국제평화주의 원칙과도 부합한다.

(3) 국제법 존중주의와 국제평화주의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조약 위반 여부를 헌법 제6조의 국제법 존중주의 위반 여부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 이는 국제규범이 직접적인 위헌심사 기준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국제평화주의 관점에서도 국제규범 준수는 헌법 정신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시사점 및 결론

- 헌법재판소는 국제규범을 법률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국제인권조약 등 특정 국제규범이 헌법재판에서 심사 기준으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

- 국제규범을 헌법재판의 직접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재 법체계에서 어렵지만, 국제법 존중주의와 결합하면 간접적으로 헌법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향후 국제법과 헌법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 결론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관계 또한 국제법 규범과 연관성이 없지 않으며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남과 북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활동하는 영역에서는 국제규범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제규범과 헌법과의 관계 정립은 향후 남북관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결론을 도출함.

(3) 제90회 월례세미나 (2024년 8월23-24일에 걸쳐 진행됨)

- 서울대 박사과정 중인 김영우 학생이 국보법 판례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

- 사건 개요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활동한 혐의로 피고인 3명을 2021년 8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원 판결

2024년 2월 16일 청주지방법원은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은 피고인에게 2,6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유죄 판단: 이적단체 조직, 북한 공작원 접선, 북한 지령에 따른 활동(F-35A 반대 시위 등), 공작금 수수

무죄 판단: 간첩죄, 특수잠입·탈출, 이적표현물 소지 등

- 주요 법적 쟁점

(1)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및 동일성

디지털 증거(노트북, 하드디스크 등)의 신뢰성이 문제되었으며, 법원은 해쉬값 검증 및 국과수 감정관의 증언을 통해 무결성을 인정함.

(2) 대북보고문 및 북한지령문의 증거능력

대북보고문(내국인 작성): 존재 자체가 정황증거로 인정됨.

북한지령문(북한 공작원 작성): 작성자 신문 불가능으로 인해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음.

(3) 영장 없이 촬영한 영상물의 증거능력

일반적인 촬영: 적법 인정

노트북 화면 촬영(대북통신문 등): 통신의 비밀 침해로 증거능력 부인

(4) 해외에서의 수사활동 적법성

캄보디아·중국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촬영한 행위가 형사사법공조 절차 없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국제법적 문제로 피고인의 재판에서는 증거능력 인정.

- 국가보안법 관련 논점

(1) 특수잠입·탈출죄 해석

법원은 "북한으로의 출입국"만을 잠입·탈출로 해석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무죄 판단.

(2) 국가기밀 인정 범위

국회 외통위원장과 의 면담 내용, 정당 관계자 자료 등은 ***사소한 정보***로 판단되어 간첩죄 적용되지 않음.

(3)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적용 여부

법원은 실질적 해악 발생이 명백하지 않다며 이적표현물 소지죄 및 동조죄 무죄 판결.

- 공판 진행 관련 문제

(1) 비공개 재판 논란

국정원 직원, 북한이탈주민 증언 시 차폐시설 사용 → 법원은 국가안보 및 증인 보호 필요성을 인정함.

(2) 재판 지연 문제

2021년 9월 기소 후 1심 판결까지 29개월(883일) 소요

피고인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5회, UN 정치망명 신청 등을 통해 재판 지연

- 정책적 고려 및 제언

(1) 안보사건 전담 법원/재판부 설치: 디지털 증거 검토 및 국가안보 사건 특성을 고려한 신속한 재판 필요.

(2) 국민참여재판 제외 검토: 국가안보 사건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3) 북한 공작원의 문건 증거능력 인정 특례 신설: 증거 채택을 위한 법 개정 검토 필요.

연구를 통해 위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성과가 있었음.

(4) 제91회 월례세미나 (2024년 9월 28일 개최)

- 발제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진호성 연구관이 하였고 청소년 소셜미디어 문제를 통해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헌법적 쟁점에 대해 연구하여 아래와 같은 성과를 내었음.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 서론

- 소셜미디어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음.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급증하면서 중독,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괴롭힘 등의 문제 대두.

-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한 해외 입법 동향과 헌법적 문제를 검토하고자 함.

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실태

-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 98% 이상, 60% 이상이 하루 3시간 이상 사용.

-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인기 플랫폼 이용률 높음.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학업 성취도, 정신 건강,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됨.

- 해외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하는 추세.

- 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이용 실태가 보고됨.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해외 입법 동향

(1) 미국

-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 입법 시도.
- 본인 확인 및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 논의.
- 일부 주에서는 청소년 대상 유해 콘텐츠 차단 및 특정 시간대 이용 제한 법안 시행.
- 하급심 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 법안을 위헌으로 판단.

(2) 유럽연합(EU)

-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 도입.
-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의무 강화.
- 청소년 대상 맞춤형 광고 및 데이터 수집 제한.

(3) 영국

-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 시행.
-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

(4) 일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 마련.
- 부모 동의 의무화 및 특정 시간대 이용 제한 법안 시행.
-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헌법적 문제와 논쟁

(1) 기본권 제한 문제

-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이 제한될 가능성.

- 국가가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청소년 보호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 필요.

(2) 과잉 규제 논란

- 규제 범위가 모호하여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능성.

- 사전검열 금지 원칙과 충돌할 위험.

(3) 개인정보 보호 문제

- 연령 확인을 위해 청소년 및 성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필요.

- 데이터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증가.

- 익명성의 자유가 제한될 위험.

5. 해결책 및 대안

(1) 공익 보호와 기본권 보장의 균형

- 청소년 보호와 자유권 보장을 조화롭게 설계해야 함.

-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와 이용자 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음.

(2) 연령 확인 방식 개선

- 익명성을 보호하면서도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인증 시스템 개발 필요.

- 안전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기술적 솔루션 도입 검토.

(3) 청소년의 자율적인 미디어 이용 교육 강화

- 청소년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 부모와 학교의 역할을 확대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진행.

(4) 플랫폼 자율규제 및 보호 기능 강화

-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연령 확인 및 유해 콘텐츠 차단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
- 청소년 친화적인 보호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장려.

6. 결론

- 소셜미디어 규제는 필요하지만 헌법적 한계를 고려해야 하며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적인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적절히 조합하여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준비는 추후 통일한국에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5) 제92회 월례세미나 (2024년 10월 26일 개최됨)

- 발제자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재학 중인 조형근 학생임.
- 북한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송달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성과를 내었음 :
-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증가하는 현실임.
- 법원은 공시송달을 인정하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본 연구는 송달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함.
-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관련 조항에 근거.
- 기존에는 남북합의서나 특별법을 통해 해결했으나, 최근 체제 차원의 불법행위가 문제됨.
-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은 기존의 민사소송과 차이가 있음.
- 형사소송과 국제법적 대응도 고려되나 실효성이 낮음.
- 최근 북한을 상대로 한 다양한 손해배상 사례 존재.
-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서 이혼을 청구한 사례가 있음.
- 법원은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목적론적 해석을 적용.
- 이는 공시송달 문제와 유사하며, 법제도 개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함.
- 북한 주민의 인권을 고려한 판례의 중요성 강조.
- 공시송달의 요건과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논란.
- 법원이 공시송달을 인정했지만, 북한의 주소가 특정된 상황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

- 공시송달 외에도 북한 UN 대표부를 통한 송달 방식이 시도됨.
- 미국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다양한 송달 방식이 적용됨.
- 따라서, 공시송달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남북한 특수관계를 고려한 별도 조항 신설 필요.
- 국제사법공조 등을 활용한 송달 방식 검토 필요.
- 대체 송달 방식 도입 : 북한 UN 대표부 등 해외 거점을 통한 송달 가능성 검토.
-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절차적 문제가 중요한데 특히 송달 문제를 해결해야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법적 개선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며, 북한 관련 판례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결과가 연구를 통해 도출됨.

(6) 제93회 월례세미나 (11월 30일 개최)

- 발제자 중 진호성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판례 연구를 진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음.

1. 사건 개요 및 배경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25조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 사건 개요

- 청구인들은 북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물품, 금전 등을 살포하는 활동을 해온 개인·단체.
- 2020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 및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

(2) 심판 대상 조항

-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금지됨.
- 제25조(벌칙):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2. 헌법재판소의 판단

(1)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 위헌 의견(4인, 다수 의견):
- 전단 살포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정치적 표현으로 보호되어야 함.
-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내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 덜 침해적인 수단(사전 신고제, 경찰 통제 등)이 가능함에도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은 과도함.

- 합헌 의견(2인, 반대 의견):

- 표현의 내용이 아닌 전달 방법(살포 행위) 제한에 초점.

-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보호하는 공익이 더 중요.

(2) 책임주의 원칙 위배 여부

- 위헌 의견(4인, 다수 의견):

- 전단 살포 자체는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북한의 보복적 대응이 전적으로 북한의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함.

- 합헌 의견(2인, 반대 의견):

- 북한의 적대적 대응이 전단 살포로 유발되므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봄.

(3) 사전검열금지원칙 적용 여부

- 헌법재판소 판단:

해당 법 조항은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도 살포할 수 있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절차가 없으므로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3. 판례의 시사점 및 논란

(1) 남북관계 특수성 고려 부족

- 북한이 정보 통제를 강화하며 대북전단을 적대행위로 간주.

- 그러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군사적 긴장 완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접근이 부족함.

(2) 법 조항의 모호성 문제

-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이 자의적일 가능성.

- 특정 시점에서 남북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 있음.

(3)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논란

-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할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

- 그러나 전단 살포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도달하는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

4. 정책적 고려 및 제언

- 전단 살포 규제 방식 개선
- 장소적 제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만 제한하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
- 신고제 도입: 사전 신고 후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대체.
- 형사처벌 완화: 과태료 등 행정처벌로 전환하여 기본권 침해 최소화.
-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법 개정 필요
-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규제 완화 가능성 반영.
- 남북관계 발전과 국가안보 간 균형을 고려한 법률 개정 필요.
- 국민 안전과 표현의 자유 균형 유지
-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 마련.

본 연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이번 결정은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법 조항의 모호성, 남북관계의 특수성 반영 부족 등으로 인해 향후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함.

4. 학술대회 연구 성과

(1) 2024년 7월 13일 - “남북관계에 대한 최근의 판례”

- 서울대 법학연구소 정구진 박사가 개성공단사업관련 내용으로 발제함.
- 연구목적 :개성공업지구는 남북 경제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2003년 착공 후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운영되다가 2016년 전면 중단되었다. 연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 관련 주요 판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발생한 폭력, 성범죄 사건 등에 대해 남한 법원이 남한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
- 북한 지역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건에서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됨.
-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서도 남한 법원이 남한 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적용.
-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 기업 간 계약 분쟁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인정.
- 그러나 북한의 법이 개입될 경우, 재판 관할권과 준거법 적용 여부가 혼재된 판결이 존재.
- 개성공업지구를 활용한 북한 문화재 밀반입 사례에서 관련자들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됨.
- 허위 방문 신청 등을 통한 개성공업지구 출입 문제도 국가보안법과 연관되어 다뤄짐.
- 2016년 개성공업지구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
- 그러나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들이 손해배상 및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지속됨. 기업 간 계약 이행 불능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쌍방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 남북관계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문제가 대두됨.
- 개성공업지구 내 법 적용 및 분쟁 해결 기준이 불명확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필요하다는 결론 도출.
- 남한 법원의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준거법 적용 기준을 일관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와 경제의 분리 운영 필요
- 개성공업지구 운영 중단 결정이 국가안보와 연계되면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킴. 경제협력의 지속성을 위해 정치적 변수와 독립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그리고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 필요
- 향후 남북 경제협력 재개 시,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 체계 논의 필요.
- 기업들이 남북 협력 사업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 강화 필요.
- 개성공업지구 관련 판례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적 한계를 보여준다.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됨.

(2) 2024년 11월 8일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쟁점과 과제”

- 본 학술대회에, 서울대학교 정구진 박사, 강승우 변호사, 육군 3사관학교 강민식 교수 등이 연구에 참여함.

<통일을 준비하는 법체계 구축>

1. 서론

-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법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정이다.

- 현재 남북한은 서로 다른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이 통일 이후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 통일법제 구축을 위한 주요 법률안, '8.15 통일독트린'의 규범적 의미, 법적 과제, 그리고 향후 통일 법체계 구축 방향을 다룬다.

2. 제21대 국회의 통일 관련 법률안 검토

(1) 주요 법률안 개요

- 제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및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 이들 법률안은 남북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며, 통일 후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 남북 간 합의 이행을 강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 포함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및 협력사업 지원 확대
-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범위 확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

- 탈북민의 취업 및 교육 지원 강화
- 정착금 지원 확대 및 주거 지원 제도 개선

- 탈북민의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

<남북경제협법 제정안>

-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포함
- 대북 투자의 안정성 확보 및 분쟁 조정 기구 설립
- 대북 제재와 경제협력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정 마련

(2) 법률안의 주요 쟁점

<남북 합의의 법적 구속력 문제>

- 현재 남북 간 체결된 합의서는 국제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미약함.
- 이를 국내법으로 명문화할 경우,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법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 보호 문제>

- 현재 탈북민 지원법은 기본적인 정착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미흡함.
- 탈북민의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남북 경제협력의 법적 안정성 부족
- 남북경제협이 정부 정책에 따라 급격히 변동되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움.
- 북한 내 투자 재산 보호 문제 및 남북 경제협력 중단 시 기업들의 손해배상 문제 발생.

(3) 법률안 평가 및 개선 방향

- 법 적용의 유연성 확보
-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법이 경직되지 않도록 일정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대북 투자 보호 제도 도입
- 남북경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지원 강화
- 주거, 취업, 교육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탈북민의 사회 적응을 돕는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3. '8.15 통일독트린'의 규범적 고찰

(1) 개념과 배경

- '8.15 통일독트린'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통일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원칙으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 원칙>

-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의 통일 추구
-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강화
- 경제적·사회적 교류를 확대하여 단계적 통일 추진

<목표>

- 남북한 주민 간 신뢰 구축
-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평화 통일 기반 조성
-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통일 후 사회적 혼란 방지

(2) 법적 의미

<헌법과의 관계>

-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8.15 통일독트린'도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남북기본합의서와의 관계>

- 남북기본합의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지만, 법적 구속력 문제

가 존재.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정당성>

- '8.15 통일독트린'이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함.

(3) 논란과 한계

<통일 방법론에 대한 논란>

- 점진적 통일 vs. 급진적 통일 방법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 북한의 반응과 실행 가능성
- 북한이 '8.15 통일독트린'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으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찾기 어려움.
- 국제적 정당성 확보 필요
- 국제사회가 한국의 통일 정책을 지지하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4) 정책적 시사점

- 통일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유지
- 정부 교체에 따라 통일 정책이 변동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 마련 필요.
-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UN 및 주요국과 협력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야 함.

4. 향후 법체계 구축 방향

(1) 통일 대비 법제 정비

- 헌법 개정 논의
- 통일 후 남북한 체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 남북한 법제 통합 방안 연구

- 경제, 행정, 사법 시스템을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 마련.

(2) 남북 교류협력 법제 강화

- 남북 경제협력 보호법 제정

- 남북경협 기업들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인도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북한 주민 지원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3)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

-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통일 정책 추진

- UN 및 국제기구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적·외교적 전략을 마련해야 함.

- 통일 후 국제법상 국가승계 문제 대비

- 북한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결론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법체계 구축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헌법 개정, 남북 법제 정비, 국제법적 협력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성과를 내었음.

(3) 2024년 11월 28일 “통일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

- 본 학술대회에서 청주지방법원 박종원 판사는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성과를 내었다.
- 주제는 남북관계 손해배상 판례 분석이었다.

1. 서론

- 남북한 교류가 활발하던 시기 이후 관련 판례가 드물었으나, 최근 북한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면서 기존 판례 분석이 필요해졌다.
- 판례는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국가면제 등의 쟁점을 포함하며, 남북관계 관련 요소가 고려된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2. 소송요건의 문제

가. 재판권 및 국제재판관할

<개인이 피고인 경우>

- 개성공단 버스 사고 사건: 남한 법원은 북한 법인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헌법 제3조 근거).
- 금강산관광지구 교통사고 사건: 북한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남한 법원이 재판관할을 인정.

<북한이 피고인 경우>

- 국군포로, 무장공비 사건, 제2연평해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한 법원은 북한을 피고로 한 재판을 진행.
- 북한을 국가가 아닌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일본 법원에서는 북한의 행위를 일본 내 불법행위와 연계해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

<평가>

- 남한 법원의 재판관할 인정은 정당하지만, 북한을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는 논란.
- 국제재판관할 판단 시 실질적 관련성을 고려해야 하며, 국제법적 접근 필요.
- 북한의 행위가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한 경우, 재판권면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권리능력 및 당사자능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국군포로, 재일교포 사건에서 북한을 피고로 인정했으나, 당사자능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없음.
- 집행단계에서 법원은 북한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
-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을 외국으로 보고 당사자능력을 인정.
-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및 현지기업
- 관리위원회는 남한 법률에서도 법인격이 인정되어 소송 당사자능력 인정.
-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기업의 당사자능력 여부는 사건별로 판단이 달랐음.

3. 실체법적 쟁점

가. 준거법 지정

- 개성공업지구 관련 사건에서 북한법을 준거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
- 재판 관할을 남한으로 인정한 경우, 준거법도 남한법으로 판단하는 경향.

나. 손해배상 책임

- 국군포로, 무장공비 사건 등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배상액 집행이 어려움.
- 북한과 관련된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추심이 인정된 사례 있음.

4. 소송절차 및 집행 문제

-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이 활용됨.
- 판결 집행 시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와의 충돌 문제 발생.
- 집행법원은 북한 관련 재산 압류를 인정하는 경향.
- 결론적으로, 남한 법원은 북한을 피고로 한 사건에서 재판권과 재판관할을 적극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북한의 법적 지위를 고려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며, 국제 법적 원칙과 실질적 관련성을 기반으로 한 재판권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집행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월례세미나 및 학술대회 총평>

- 법원, 검찰, 변호사, 학계 및 학생들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역의 인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과 연구가 이루어짐.
- 통일문제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이 다루어짐.
- 자료질 발간을 통해 향후 추가 연구 및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만들고 높였음.
- 발제/토론자 뿐만 아니라 세미나와 학술대회에 참여한 여러 인원들이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통일문제를 바라보게 됨으로써 사회 전반적 통일 인식 확산에 기여함.

5. 기타 학술 연구 사항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중인 박정훈 학생이 남북관계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함
- 남북한 간의 저작권 교류와 협력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기초로 한다.
-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는 남북한이 문화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여기에는 저작권 보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 하지만 이후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미흡하였고, 남북 관계의 부침 속에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유지되어 왔다.
- 남북 저작권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월북 작가들의 작품이 남한에서 무단 출판된 사례가 발생하면서였다.
- 이후 1990년대 들어 남북 간 문화 교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기 시작했다.
-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를 추진하면서, 법제 차이에 따른 저작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되었다.
- 현재 남한과 북한 모두 자국의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베른협약에도 가입한 상태다.
- 그러나 법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며, 북한 저작물의 남한 내 이용, 남한 저작물의 북한 내 이용에 대한 법적 보호와 권리 행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남북 저작권 분쟁의 원인>

1) 법제 차이

- 남한과 북한은 각기 다른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 남한은 저작자의 개별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 반면 북한은 국가 주도의 창작 활동이 일반적이며, 저작권 보호 역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북한의 저작권법은 공표가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 기관이 특정 저작물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또한 북한의 창작 활동은 개인 창작보다 집체 창작(집단 창작)의 비중이 크며, 개인 저작자의 권리 행사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들은 남북 간 저작권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2) 국제법적 문제

- 남북한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이지만, 베른협약은 가입국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법률을 통해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베른협약만으로 남북한 간 저작권 보호 수준의 차이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 베른협약에서는 저작권 보호에 있어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남북한은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이로 인해 남한 내에서 북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방식이나, 북한 내에서 남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3) 계약과 합의의 한계

- 2005년 남한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북한의 저작권사무국 간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합의가 체결되었다.

- 이 합의에 따라 경문협은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남한 내에서 북한 저작물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북한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 하지만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료 송금이 중단되었고, 이후에도 합의가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경문협과 북한 저작권사무국 간의 합의는 정부 간 공식 협정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협정이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남북 간 저작권 문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고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남북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

1) 공동협의체 구성

- 남북한 간의 저작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협의체는 남북한의 법률 전문가, 정부 관계자, 민간 협력 기관 등이 참여하여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또한, 협의체는 남북한 간 저작권 보호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2) 법·제도 조정

- 남북한 간의 법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저작권 보호 관련 법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호 저작권 보호를 위한 특별 법안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상대방의 저작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또한 저작물 보호 및 권리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

3) 신뢰 구축과 투명성 확보

- 남북한 간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 저작권 기관과 협력하여 저작물의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자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또한, 남북한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저작권료 징수 및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4) 국제법 활용

- 국제 저작권 보호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한 간 저작권 보호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베른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적 기준을 참고하여 남북한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저작권 분쟁을 중재하거나,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남북한 간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법적 쟁점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배경과도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이기에 남북한 간의 법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동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 간의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저작권 보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